세무회계 동행

# 증여세 상담 결과 안내

견본 · 가상 인물과 가상 숫자로 만든 예시입니다 · 2026 년 ○월 ○일 작성

**홍길동 고객님, 오늘 상담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.**

결혼을 앞둔 따님(성년)에게 전세자금 1 억 5,000 만 원을 주시는 경우입니다. 지난 10 년 동안 받은 재산이 없다는 말씀을 기준으로 했습니다.

## 1 한눈에 보는 결론
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증여세 | 내실 세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공제 두 가지를 합치면 1 억 5,000 만 원입니다. |
| 신고 |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시길 권합니다. 12 월 10 일에 주시면 2027 년 3 월 31 일까지입니다. |

## 2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

| 구분 | 금액 |
|---|---|
| 부모님께 받은 돈 | 150,000,000 원 |
|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| − 50,000,000 원 |
| 혼인 증여재산공제 | − 100,000,000 원 |
| **세금을 매기는 금액** | **0 원** |

아버님·어머님이 각각 받는 것이 아니라 **두 분 합쳐 10 년에 5,000 만 원**입니다. 혼인 공제 1 억 원도 출산 공제와 합쳐 평생 한 번입니다.

근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 47 조 제 2 항, 제 53 조 제 2 호, 제 53 조의 2 제 1 항·제 3 항

## 3 혼인 공제의 조건

돈을 받은 날 앞뒤 2 년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. 2 년 안에 못 하시면 **2 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 안에 수정신고**하시면 됩니다. 가산세 없이 이자 상당액만 더해집니다.

근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 53 조의 2 제 6 항, 같은 법 시행령 제 46 조

## 4 계속 진행하신다면 필요한 자료

-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(혼인신고 뒤), 전세계약서 사본
- 부모님 계좌에서 따님 명의 계좌로 바로 보낸 이체 내역